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 규정은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지를 규정한 같은 조 제3항의 예외 규정으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청구인의 분사무소인 지사·출장소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본부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특별징수한 주민세의 납세지는 청구인(본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요양기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아 취소로 결정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0년도 까지 처분청 관내에 있는 요양기관에게 의료보전용역소득(이하 “요양급여비”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특별징수한 주민세를 처분청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납입하였으므로, 당해 기간 내에 원천징수한 소득세(578,288,810원)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63,611,360원(가산세 포함)을 2001.12.12.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민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27조 및 지방세법 제179조의3에 의한 원천(특별) 징수의무자로서 청구인(본부)이 전국의 요양기관(병·의원 등)에 직접 요양 급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양급여비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특별징수분 주민세를 지방세법 제17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청구인(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정당하게 납부하여 왔는데도, 처분청이 특별징수분 주민세의 납세지가 요양급여비를 지급받는 곳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청구인이 특별징수한 주민세를 어디에 납입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5조 제3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 부과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같은 조 제4항에